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규 제 13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청가의 허가)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중
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5년 10월 30일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장

류 상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1. 개정이유

의원의 청가에 관하여 5일을 초과하여 청가를 얻고자 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절차로서, 일수와 상관없이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의원의 청가를 일수에 상관없이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함.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없음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청가의 허가) <u>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,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.</u>	제3조(청가의 허가) <u>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.</u>